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No. 7

식물위생 증명 시스템

PHYTOSANITARY CERTIFICATION SYSTEM

2011

FAO/IPPC 사무국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서 출판하였다.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을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에서 마련하였다."

본 출판에서 사용한 명칭과 자료들의 표현은 어떠한 국가, 영토, 도시 혹은 지역이나 이들의 정부당국, 또는 이들 국경 및 경계에 대한 한계와 관련하여 UN FAO 측의 어떠한 의견의 표현도 암시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제조업체의 상품에 대한 혹은 이들이 특허권이 주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이들을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유형을 가진 다른 것들보다 선호되어 FAO에서 이들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정보 산물에서 표현된 의견은 저자의 의견이며 반드시 FAO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모든 권한은 보호된다. FAO는 이 정보 산물에서 자료들이 재생산되고 배분되는 것을 권장한다. 비상업적인 사용은 요청이 있을 경우 무료로 허가된다. 교육목적을 포함하는 재판매 또는 다른 상업적 목적을 위한 재생산은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FAO 저작권 자료의 재생산 또는 배포를 위한 권한과 라이센스와 관련된 모든 요청은 이메일 copyright@fao.org 또는 이태리 로마 00153 Viale delle Terme di Caracalla FAO Research and Extension, Office of Knowledge Exchange, Publishing Policy and Support Branch, Chief에게 보내져야 한다.

"© QIA, 2011 (한국어 번역)"
"© FAO, 2011 (영문판)"

출판 내력

이 부분은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니다.

1995. 5월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제2차 전문가 위원회(CEPM)에서 초안이 논의됨

1996. 5월 제3차 CEPM에서 수정된 문안의 채택이 권고됨

1997. 11월 제29차 FAO 총회에서 채택됨

ISPM 7: 1997. Export certification system. Rome, IPPC, FAO

2006 제1차 식물위생조치 위원회(CPM)에서 개정이 요청됨. 주제 번호 2010-013

2006. 11월 작업지시서 38번이 기준위원회에 의해 승인됨

2008. 2월 ISPM 7 개정을 위한 전문가 작업단 회의에서 초안 작성

2009. 5월 기준위원회에서 초안이 검토됨

2009. 6월 정규 절차에 의한 회원국 의견수렴을 위하여 승인됨

2010. 2월 회원국 의견에 따라 간사가 초안을 수정함

2010. 5월 기준위원회 작업단(SC-7)에서 논의하고 수정함

2010. 11월 기준위원회에서 논의하고 CPM-6에 상정하기로 결정

2011. 3월 CPM-6에서 채택

ISPM 7:2011 *식물위생 증명*. Rome, IPPC, FAO

목 차

서론

채택
범위
참고문헌
용어
요건의 개요

요건

1. 법적권한
2. NPPO(국가식물보호기관)의 책임
   - 2.1 행정적 책임
   - 2.2. 운영적 책임
3. 자원과 인프라 구조
   - 3.1 직원
   - 3.2 식물위생 수입요건 정보
   - 3.3 규제병해충의 기술적 정보
   - 3.4 재료와 시설
4. 문서화
   - 4.1 식물위생증명서들
   - 4.2 절차 문서
   - 4.3 기록 보존
5. **의사소통**
   - 5.1 수출국 내의 의사소통
   - 5.2 NPPOs간의 의사소통
6.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검토

부록 1: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적 직원(public officer)에 대한 지침

서 론

채택

이 기준은 1997년 11월 FAO 29차 총회에서 *수출증명시스템*으로 채택되었다. 첫 번째 개정판이 2011년 3월 6차 CPM에서 ISPM 7:2011로 채택되었다.

범위

본 기준은 국가식물보호기구(NPPOs)가 설정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요건을 포함하고 구성요건을 설명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1](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재수출 수출위생증명서)의 준비와 발급은 ISPM 12:2011에 설명되어 있다.

참고문헌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ome, IPPC, FAO.

ISPM 5. *Glossary of phytosanitary terms.* Rome, IPPC, FAO.

ISPM 12. 2011. *Phytosanitary certificates.* Rome, IPPC, FAO.

ISPM 13. 2001. *Guidelines for the notification of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tion.* Rome, IPPC, FAO.

ISPM 20. 2004. *Guidelines for a phytosanitary import regulatory system.* Rome, IPPC, FAO.

용어정의

식물위생 용어의 정의는 ISPM 5에서 찾아볼 수 있다.

---

1) IPPC는 수출 목적으로는 "식물위생증명서", 재수출 목적으로는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라고 부른다. 이 기준에서 이들 용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수출 식물위생증명서"와 "재수출 식물위생증명서"가 사용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복수)"는 이 두 가지의 증명서를 포함할 때 사용된다.

요건의 개요

식물위생증명서들은 해당 화물이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해주기 위하여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화물에 대하여 발급된다.

수출국의 NPPO는 식물위생증명을 수행하는 고유의 권한이 있으며, 법적, 행정적 요건을 취급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NPPO는,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의 시료채취, 검사, 병해충의 검출 및 동정; 작물의 예찰; 소독처리 실시; 기록유지 시스템 유지를 포함하는 운영적 책임을 진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출국의 NPPO는 필요한 능력과 기술적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있어야 한다. 자격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NPPO에서 책임지는 경우, 권한을 부여받은 비정부 직원도 특정한 증명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공식적인 정보는 수출국의 NPPO 직원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시료채취, 검사, 실험실 검사, 소독처리와 더불어 수입국의 규제병해충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또한 식물위생증명에 관여하는 직원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

수출국 NPPO는 관련된 증명 절차를 문서화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절차를 위한 지침과 안내가 있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하기 위한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수출국과 수입국의 NPPOs는 접촉창구(contact points)를 통하여 공식적 의사소통을 유지하여야 한다. 식물위생 수입요건과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는 소통되어야 한다.

요건

IPPC 협약은 V.1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각 체약당사국은, 수출되는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물품과 화물이 기술된 증명 진술문에 일치함을 보증할 목적으로 식물위생 증명에 대한 준비를 한다....

그러므로, 체약국들은 식물, 식물성 산물 및 다른 규제 물품들이 수입 체약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규제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하기 위한 시스템은 법적 권한, 행정적·운영적 책임, 자원과 인프라 구조, 문서화, 의사소통과 시스템 점검의 요인들을 포함한다.

1. 법적권한

NPPO는 법적 또는 행정적 방법으로 식물위생증명서들을 포함한 수출 및 재수출과 관련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IPPC 협약 IV.2(a)에 따라서 이 권한을 사용하는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화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2. NPPO 책임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을 이행하기 위하여, NPPO는 다음의 행정적, 운영적 책임을 진다.

2.1 행정적 책임

NPPO는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요건이 만족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을 가져야 하며, 다음을 할 수 있어야한다:

-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NPPO 내 직원 또는 사무실의 명확화
- 식물위생증명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들의 의무와 의사소통 창구의 명확화
- 적합한 자격요건과 능력을 가진 직원을 고용하거나, 권한을 부여
- 적절하고, 지속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되는 것을 확인
- 적절한 직원과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

2.2 운영적 책임

NPPO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어야한다:

- 식물위생증명에 필요한 식물위생 수입요건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고 유지하며 직원들에게 적절한 작업 교육을 제공
-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 물품의 검사, 시료채취, 실험실 검사를 수행
- 병해충 검출 및 동정
- 식물, 식물성 산물과 다른 규제물품을 구분
- 필요한 식물위생 소독처리를 수행, 감독 또는 감사
- 식물위생증명서들에 기술된 식물위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예찰과 모니터링 그리고 방제 활동을 수행
- 식물위생증명서들을 완성하고 발급
- 적정한 식물위생 절차가 설정되고 바르게 실행된 것을 확인
- 위반사항 통보에 대한 조사 및 시정조치(적정할 경우)
- 식물위생 수입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운영적 교육 실시
- 발급된 식물위생증명서들과 다른 관련 문서들의 복사본을 연대별로 정리
-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점검
- 이해관계 갈등, 부정 발급,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사용과 같은 잠재적 문제점에 대한 가능한 정도까지 안전장치 실행
- 직원에 대한 훈련 실시
- 위임받은 직원의 자격 확인
- 수출 전 식물위생증명 후 화물에 대한 식물위생 안전을 적절한 절차를 통한 확인

3. 자원과 인프라

3.1 인력

수출국 NPPO는, 식물위생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의무과 책임에 적당한 기술적 자격요건과 능력을 가진 직원이 있거나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직원들을 2.2항에서 기술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직원들은 기술적 자격과 능력, 전문성과 훈련에 더하여서, 직원들은 식물위생증명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 없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하는 공적 직원에 대한 지침은 부록 1[개발 중이며 필요시 수정될 것임]에 서술되어 있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발급을 제외하고, 비정부 직원은 특정한 증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NPPO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을 수 있다. 권한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NPPO가 그 책임을 진다. 공적인 업무수행에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동등한 제약과 의무를 갖게 되며 결과에 영향할 수 있는 이해(금전적 또는 다른) 갈등이 없어야 한다.

3.2 식물위생 수입요건 정보

식물위생증명은 수입국으로부터의 공식 정보를 근거로 해야 한다. 수출국의 NPPO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 수입국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관련된 최근 공식 정보를 보유해야 한다. 이 정보는 IPPC 협약 VII.2(b), VII.2(d)과 VII.2(i)와 ISPM 20:2004의 5.1.9.2항에 따라 접근 가능해야 한다.

3.3 규제병해충의 기술적 정보

식물위생증명을 하는 직원은 다음을 포함한 수입국 규제병해충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아야한다:

- 수출국 내 존재여부와 분포
- 생물적 특징, 예찰, 검출과 동정
- 적절할 경우 소독처리를 포함하는 병해충 방제 방법

3.4 재료와 시설

NPPO는 시료채취, 검사, 실험실 검사, 소독처리, 화물 확인 및 다른 식물

위생증명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장비, 재료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

4. 문서화

NPPO는 적용된 관련 절차를 문서화하고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식물위생증명서들, 관련 화물과 그 부분들의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 식물위생 수입요건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1 식물위생증명서

식물위생증명서들은 IPPC 협약에 명시된 식물위생증명 절차가 수행된 것에 대한 문서 확인이다. IPPC 협약 부속서에 기술된 식물위생증명서들의 견본을 사용해야 한다. 상세한 지침은 ISPM 12:2011에서 제공된다.

4.2 절차의 문서화

NPPO는, 적정할 경우 다음을 포함하는 모든 식물위생증명 시스템 절차를 포함하는 지침 문서와 작업 교육을 유지해야한다:

- 검사, 시료채취, 실험실 검사, 소독처리와 화물의 구분과 보존성 확인을 포함하는 ISPM 12:2011에서 기술된 식물위생증명서들과 관련된 특정 활동
- 공식 봉인과 표식에 대한 안전성 유지
- 구분과 (적정할 경우) 수출 전 생산, 취급과 운송의 모든 절차에 대한 식물위생 안전성을 포함하는 화물의 이력(traceability) 확인
- 수입국의 NPPO에서 요청할 경우,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 보고를 포함(이 절차는 ISPM 13:2001에 부합해야함)하는 수입국 NPPO의 위반사항 통보에 대한 조사
- 위반사항 통보 이외의 방법으로 NPPO가 인지하게 된 경우, 효력이 없거나 부정한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조사

추가로, NPPO는 이해당사자들(예; 생산자, 브로커, 무역상)과 협조하여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문서화된 절차를 가질 수 있다.

4.3 기록 보관

일반적으로 기록은 식물위생증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 유지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의 사본은 NPPO에 의해 확인과 추적을 위하여 적정한 기간(최소 1년)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이 발급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 수행한 검사, 실험실 검사, 소독처리 또는 다른 확인
- 채취한 샘플
-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이름
- 수행한 날짜
- 결과

기록은 적정한 기간(최소 1년)동안 보관되어야 NPPO는 이 기록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 기록의 표준화된 문서를 위하여 안전한 전자 보관 및 출력의 사용이 권장된다.

식물위생증명서들을 발급받지 못한 불합격 화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5. 의사소통

5.1 수출국 내의 의사소통

NPPO는 관련 정부부처 및 기관, 권한을 부여 받은 직원, 생산자, 브로커, 수출자와 다른 이해당사자와 같은 산업체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시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 다른 나라의 식물위생 수입요건
- 병해충 상황과 지리적 분포
- 운영 절차

5.2 NPPOs간의 의사소통

IPPC 협약 VIII.2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동 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을 위한 접촉 창구를 지정한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은 접촉창구 간에 발송, 수신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 정보나 활동(예; 위반사항 통보)에 대하여 NPPO는 대체 접촉창구를 지정할 수도 있다.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수출국 NPPO에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수출국에 요구에 답변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수입국, 가능하면 IPPC 협약 VII.2(b)에 의한 접촉창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식물보호기구(RPPOs) 또는 국제식물위생 포탈(IPP)(https://www.ippc.int)을 통하여 FAO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가능하면 영어로, 제공될 수도 있다. 수출국의 NPPO는 수출자들에게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요건 변경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권장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수출국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명확히 하고 확인하기 위하여 수입국 IPPC 접촉창구와 의사소통을 하여야 한다.

식물위생증명 후, 수출국 NPPO가 수출된 화물이 수입국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수입국의 IPPC 접촉창구 또는 지정된 대체 접촉창구는 가능한 빨리 통보를 받아야 한다. 수입 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ISPM 13:2001이 적용된다.

6. 식물위생 시스템 검토

NPPO는 정기적으로 수출 식물위생증명 시스템의 모든 요건의 유효성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경을 해야 한다.

이 부록은 참고 목적일 뿐이며 이 기준을 규정하는 부분은 아니다.

부록 1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공적 직원에 대한 지침